「2025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지원목적 :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 분야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 □ 모집기간 : 2025. 5. 26. ~ 6. 10.
-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최대 11월 15일까지
- □ 지원자격 : 아래의 요건 (1) ~ (3)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 업 또는 비영리법인
 -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 지원분야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 비용지원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SMR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술 분석·검증 비용지원

SMR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 분석 및 검증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지원

SMR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시설·장비 또는 신규 도입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SMR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술·제품 또는 융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SM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기술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On-demand 지원

상기 지원 분야를 제외한 비R&D성 SMR 분야 진출 관련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MR 분야 적합성 및 적정성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SMR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비용을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 (단, 출장계획을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 지원규모 (최대기준)

| 구분 | 총지원금* (100%) | 정부지원금 (80%) | 자기부담금** (20%) |
|---------------------|-----------------|----------------|------------------|
|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 | | | |
| 기술 분석·검증 비용 | | | |
|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 | 9,375만 원 | 7,500만 원 | 1,875만 원 |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 | | |
| On-demand | | | |
| SMR 해외시장 개척 | 1,875만 원 | 1,500만 원 | 375만 원 |

- *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을 지원 (vat 제외)
- ** 자기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 (ex. 자기부담금 1,250만원 구성 시 현금 125만원, 현물 1,125만원 구성 가능)
-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포함)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 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선정방법

- O 평가방법
 -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표(지침 별지 제4-①호 참조)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 (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평점 산출)
- 선정결과 확인 :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 □ 선정배제 대상
 - O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 인 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 O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 O 휴·폐업중인 기업

- O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 우대대상 (※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O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 O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 □ 사업추진절차

| 과제신청 | ightharpoonup | 서류검토 | | 선정평가 |
|---------------------|---------------|----------|---|-------------------------|
| 25. 5. 26. ~ 6. 10. | | ~ 6. 18. | V | 6월 말까지 |
| | | | | $\overline{\mathbb{Q}}$ |
| 협약체결 | / _ | 서류보완 | | 과제선정 |
| ~ 7. 11. | | ~ 7. 4. | 7 | ~ 6. 30. |

-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 사업구분 | 서식명 | 필수여부 | 사업구분 | |
|------|---------------------------|------|------|--|
| SMR | 사업계획서 | 필수 | 공통 | |
|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필수 | 공통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공통 | |
| | 사업수행 기업 청렴이행서약서 | 필수 | 공통 | |
|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선택 | 공통 | |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공통 | |
| | 기업 신용평가서 | 필수 | 공통 | |
| |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
| |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
| |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 필수 | 공통 | |
| |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 | | |
| |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 | | |
|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공통 | |
| |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 선택 | 공 | |
|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 | | |
| | SMR 분야 연구용역실적 증명서류 | | | |
| | (해당기업만) | | | |

- □ 신청방법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s://pms.nisp.kr/) 회원가입후 '참여신청' 탭에서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승인요청
 -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신청 : (예) '기술분석 및 검증', 'SMR 해외시장 개척'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신청
- □ 문의처
 - O 연락처 : 기업지원팀 대리 유귀현(02-6257-2596), 연구원 홍은선 (02-6953-8732)
 - O 이메일 : smr@kaif.or.kr
- □ 기타사항
 - 신청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음

붙임. 2025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공고문